

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- 정부의 「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.공모제도 개편 방안(‘16.10.5, 금융위)」에 따라
 -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,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상장관리.퇴출제도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

-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특례상장을 허용하고, 현행 기술평가모델을 다변화(안 §2③)
- 상장주관사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*를 도입
 - * 상장주관사 추천보고서 공개, 풋백옵션부여 등

나.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

□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*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 신설(안 §6①, §7①.②)

* 2년 평균 매출액증가율,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등

① 시총 500 억이상 & 직전매출액 30 억원 이상 & 직전 2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%이상인 기업

② 시총 500 억이상 & 공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%이상인 기업

다. SPAC, 대형법인, 외국기업 진입요건 등 정비

□ SPAC 합병상장시 합병대상법인 진입요건을 확대(안 §19 의 4②)

○ 기존 ROE, 당기순익 요건 외에 매출액 50 억 & 매출액증가율 20% 요건을 추가

□ 대형법인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(안 §2③, §7⑧)

○ 대형법인* 대상을 외국기업까지 확대하고, 우량대형법인**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

* 대형법인 요건 : 자기자본 1 천억 또는 시가총액 2 천억 이상

** 대형법인 중 매출액 1,000 억원 & 당기순익 200 억원 이상인 국내법인

□ 외국기업 진입요건 및 관리제도 정비(안 §4 의 2②, §7 의 2①.③ §21①, §26⑥)

- **적격해외증권시장(홍콩, 싱가폴은 제외) 국가 설립 외국법인
진입 요건을 개선***

*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 허용

- 외국기업 상장시 상장주선인, 최대주주, 회계법인 책임을
강화
 - (상장주선인) 보호예수기간 연장(6 월→1 년, 단 상장일부터
6 월 경과 후 최초보유주식 5% 범위내 매각 가능)
 - (최대주주) 보호예수기간 연장(6 월→1 년)
 - (회계법인) 청구후 상장일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시한 도래시
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

라. 진입요건 개편에 따른 상장관리제도 정비

-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에 따른
상장관리제도(퇴출요건등) 정비(안 §26⑦, §27①, §28①,
§38②)

- 매출액 및 계속사업손실 요건* 적용을 5 년 유예**하고,
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 관리

* 매출액 30 억 미만, 계속사업손실 최근 3 년간 2 회 자기자본대비
50%이상

** 유예기간 중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
상장적격성실질심사 가능

마. 기타 사항

☐ 상장심사시 제출서류 합리화 및 분반기 지정감사시 요건 등
정비

(안 §4②, §6①)

☐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문구명확화 등

(안 §2⑫.⑬, §7 의 2⑤, §19①, §19 의 2①,
§19 의 3①~③, §26⑧, §41⑥)

3. 참고사항

☐ 심사 등 : (1) 전략기획부 심사 완료(심사연번호 : 16 - 143)

(2) 시장감시본부 협의 완료(감시제도 - 1536)

☐ 기 타 : 신.구조문 대비표